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76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김형동・우재준・박덕흠

임이자 • 조지연 • 정동만

서일준 · 김위상 · 주진우

안철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, 예외적으로 시험·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
한편, 제조등금지물질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,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

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 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 제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117조제2항제3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조등금지물질 수입에 관한 적용례) 제117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7조(유해·위험물질의 제조	제117조(유해・위험물질의 제조		
등 금지) ① (생 략)	등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・	②		
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			
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			
물질을 제조・수입・양도・제			
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3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8조		
	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		
	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		
	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		
	<u> </u>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